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5 호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전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는 「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및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직제의 개편) 공사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장 구 성 원

제4조(구성원) 공사에는 사장, 이사, 감사 및 직원을 둔다.

제5조(사장)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.

제6조(이사 및 감사) ① 공사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, 비상임 이사는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공사 소관업무 담당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이사는 시에서 승인된 외부전문가로 한다.

- ② 감사는 1명으로 하며, 시의 회계과장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.
-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에 따른다.

제7조(직무대행) 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시설관리본부장, 개발사업본부장, 경영기획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직원)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장 조 직

제9조(조직) ① 사장은 소관 사무를 분장하며 사장 직속으로 경영기획실, 안전감사부를 두고 시설관리본부 소속하에 체육관리부, 건강증진부, 교통관리부, 환경자원부와 개발사업본부 소속하에 개발사업부, 정비사업팀을 둔다.

②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직무) ① 시설관리본부장, 개발사업본부장, 경영기획실장, 안전감사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체육관리부장, 건강증진부장, 교통관리부장, 환경자원부장은 시설관리본부장을 보좌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개발사업부장, 정비사업팀장은 개발사업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사업부서의 장은 경영기획실과 안전감사부에 협조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정원) 공사의 직급별, 부서별 정원은 “별표 1”과 같다. 다만,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신규 채용된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.

제4장 사무분장

제12조(경영기획실) 경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경영계획, 사업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2.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 가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4.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5. 고객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
6. 홍보에 관한 사항
7.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(회의)에 관한 사항
8.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9. 노무 및 후생복지(공동 직장어린이집, 본사 구내식당 등)에 관한 사항
10. 행정사무 및 기관 행사에 관한 사항

11. 교육에 관한 사항
12. 기록물(자료)관리에 관한 사항
13. 예산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
14.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
15. 계약에 관한 사항
16. 보수 및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
17. 자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18.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

제13조(안전감사부) 안전감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감사에 관한 사항
2. 법무(규정, 소송)관리에 관한 사항
3. 윤리 및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
4. 시설·환경 및 재난·안전에 관한 사항
5.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
6. 행정정보(개인정보)화에 관한 사항

제14조(체육관리부) 체육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국민체육센터, 복합생활스포츠타운, 부곡체육시설(본사 사옥관리 포함), 송정복합체육센터(이하 “체육관리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2. 체육관리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

3. 체육관리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
4. 체육관리시설 관련 고객(민원)처리에 관한 사항
5. 체육관리시설에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6. 체육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체육관리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8. 체육관리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
9. 공공근로(공익요원)관리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체육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제15조(건강증진부) 건강증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시민체육광장, 소규모 체육시설, 송죽다목적체육관, 초막골캠핑장 시설(이하 “건강증진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2. 건강증진시설 허가에 관한 사항
3. 건강증진시설 입주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
4. 건강증진시설 관련 고객(민원)처리에 관한 사항
5. 건강증진시설에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6. 건강증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건강증진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8. 건강증진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
9. 공공근로(공익요원)관리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건강증진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제16조(교통관리부) 교통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공영주차장, 부설주차장, 버스공영차고지, 시외버스정류소,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(이하 “교통관리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통관리시설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
3. 교통관리시설 차량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4. 교통관리시설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
5. 교통관리시설 고객(민원) 처리사항
6. 교통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7. 교통관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8. 교통관리시설 관리원 관리(근무명령 등)에 관한 사항
9. 공공근로(공익요원) 관리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교통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

제17조(환경자원부) 환경자원부는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환경관리소 및 새활용타운(이하 “환경자원시설”이라 한다) 기본 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2. 환경자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환경자원시설 운영관련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4. 환경자원시설 법적관리에 관한 사항

5. 환경자원시설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6. 환경자원시설 협의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
7.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관리 기본운영사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8.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입금 징수 및 분석, 평가에 관한 사항
9.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급사항 기록관리 및 재고관리에 관한사항
10. 환경자원시설 관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
11. 공공근로(공익요원)관리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환경자원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

제18조(개발사업부) 개발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
2.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
5. 실시계획 인허가에 관한 사항
6.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, 감독에 관한 사항
7. 각종 영향평가 용역감독 및 협의에 관한 사항
8. 개발사업 계약체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9.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10. SPC 및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11. 개발사업 관련 주택 및 토지 분양, 임대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19조(정비사업팀) 정비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
2.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모집에 관한 사항
3.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
4.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허가에 관한 사항
6.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
7. 각종 용역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
8. 정비사업 계약체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
9.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10. 이주 및 철거에 관한 사항
11. 정비사업 관련 주택 및 토지 분양, 임대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20조(사무분장의 조정) ① 부서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 부서장이 정하고, 사무분장 결과를 경영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장의 결

정에 의한다.

③ 각 부서는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·협조하여야 한다.

제21조(직무수행과 책임)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.

② 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[별표1]

직 급 별 정 원 표

(단위:명)

총계	임원	일반직							업무직
		소계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
292	1	127	2	4	15	23	38	45	16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 「군포도시공사 이사회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1항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하고, “미래기획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하고, 제16조 “미래기획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한다.

② 「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3항 중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③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20조 제4항, 제32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경영지원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한다. 또한, 제48조 중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④ 「군포도시공사 기록관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본부장”을 “실장”으로 한다.

⑤ 「군포도시공사 보안업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각 부서의 장”으로 하고 제7조, 제9조제1항제1호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“개발사업부장”을 “개발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⑥ 「군포도시공사 차량관리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1항 중 “경영지원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한다.

⑦ 「군포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하고 “경영지원부장”,

체육문화부장, 교통관리부장, 환경자원부장”을 “체육관리부장, 건강증진부장, 교통관리부장, 환경자원부장”으로 한다.

⑧ 「군포도시공사 정보공개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“총괄부서의 본부장”을 “총괄부서의 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⑨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1항 중 [별표6]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⑩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4호 중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⑪ 「군포도시공사 연봉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팀·부장”을 “팀장·부장·실장”으로 한다.

⑫ 「군포도시공사 제규정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하고,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주관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⑬ 「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2 제1항, 제2항, 제3항 중 “안전감사팀”을 “청렴감사팀”으로 하고,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감사팀장”을 “청렴감사팀장”으로 한다.

⑭ 「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한다.

⑮ 「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안전감사부장”으로 한다.

⑯ 「군포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하고, 제16조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안전감사부장”로 하고, 제18조제2항제2호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

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하고, 제26조제2항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하고, 제31조제2항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한다.

⑯ 「군포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맨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안전감사팀”을 “청렴감사팀”으로 하고 제7조 중 “안전감사팀”을 “청렴감사팀”으로 하고, 제10조 “안전감사팀장”을 “청렴감사팀장”으로 하고, 제13조 중 “미래기획부 안전감사팀”을 “안전감사부 청렴감사팀”으로 한다.

⑰ 「군포도시공사 사회적가치평가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하고, “안전감사팀”을 “청렴감사팀”으로 한다.

⑱ 「군포도시공사 부패영향평가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안전감사팀”을 “청렴감사팀”으로 하고, 제2조제3호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한다.

⑲ 「군포도시공사 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처리에 관한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안전감사부”로 하고, 제8조제5항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안전감사부장”으로 하고, 제14조제3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안전감사부장”으로 한다.

⑳ 「군포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 제2항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㉑ 「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제2항 중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㉒ 「군포도시공사 제안제도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 [별지 제2호 서식] 중 “미래기획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하고, “경영지원부”를 “경영기획실”로 한다.

②4 「군포도시공사 성과관리 내부평가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3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②5 「군포도시공사 적극행정 운영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2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시설관리본부장”으로 하고, “미래기획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한다.

②6 「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도시교통본부장”을 “개발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회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